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성남시 협업형)

성남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성남시 협업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성남시장

1. 사업 목적

- 성남지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IP의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4개 세부과제 총 13개社, 최대 80백만원/社¹ 이내 지원²
 1.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이며, 지원 규모는 세부과제 별 상이
 2.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기업부담금 기준표>

기업 매출액 (19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총 10%	총 15%	총 30%	총 40%	
기업 부담률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지원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붙임1참고)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¹	추가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80백만원·8개월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²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 ■ 성남산업진흥원의 '22년 사업화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 ³ 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I ⁴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II ⁴ (개선형)	32백만원·6개월		

1.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2.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3.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4.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3.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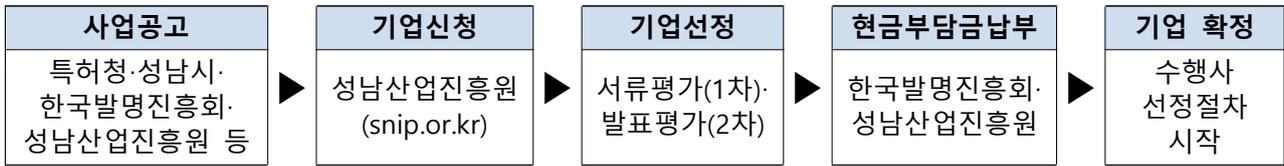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¹한 창업 7년 미만의 성남시 소재² 중소기업³
 1.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2.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18일(월) ~ 2월 15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snip.or.kr)
 - * www.snip.or.kr → 로그인 → 사업공고 → IP제품혁신 지원사업(성남시 협업형) → 사업신청(온라인)
 - ※ (제출서류) 신청서(별첨1), 활용계획서(별첨2), 추가제출서류(별첨3, 별첨4)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기업 및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18~'19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직무발명제도 내부규정 및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등)

5. 지원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6. 사업 문의

○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PD·전문위원 (02-3459-2946)
- 박광원 PD·전문위원 (02-3459-2812)
- 이정민 PD·전문위원 (02-3459-2933)
- 박형준 PD·전문위원 (02-3459-2931)
- 노형완 PD·전문위원 (02-3459-2848)
- 김승래 PD·전문위원 (02-3459-2849)

○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 정인석 계장 (02-3459-2943)
- 김주호 계장 (02-3459-2798)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 성남산업진흥원 안진영 책임 (031-782-3061)

7. 신청시 유의사항

-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온라인 신청 전 제출서류(신청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별첨 1~4 참고)
-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선정이 취소됩니다.
-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별첨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제품기획**

- (과제개요) IP분석정보를 활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신청대상) 아래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고객 중심의 혁신제품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에 해당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아이디어 한계와 기획력 부재 등으로 제품혁신을 이루지 못한 중소기업
현재 대상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 또는 비 고객이, 경쟁사 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핵심가치를 기존 제품에 융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 하고 마켓 셰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객가치 기반의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획된 혁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 절차)

과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대상 제품 및 고객에 대한 1차 분석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고객인사이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기능의 최종 분석(①기능 분석) / • 해당 시장 분석 및 정의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①선행특허 분석, ②기술트렌드 파악) • 대상 고객 분류 세분화 • 고객가치명제 발굴(①고객의 니즈 분석, ②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 분석, ③경쟁사 제품 분석, ④ 고객의 (표면적/잠재적)니즈와 미충족 욕구 분석) • 타겟 고객 및 목표시장(거점시장) 선정
▽	
타분야기술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타 분야 특허기술 검색 •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타 분야 특허기술의 선정
▽	
융합제품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 특허기술이 융합된 혁신제품 기획 • 타 분야기술 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문제의 개념적 해결(트리즈 방법론) • 제품 개발 로드맵 제안
▽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된 융합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 피드백을 통한 시장검증 • 수익모델 분석 / • 실행계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최종 융합 제품의 특허전략 수립

□ 문제해결

- (과제개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신청대상)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양산 중인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의 기술적인 문제(성능,품질,원가,공정 문제)를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경쟁사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기획하고, 원천특허를 선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사 제품이 해외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적 회피가 아닌 원천적으로 다른 방식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다른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 절차)

과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및 제품 문제의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제품문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유사분야 특허분석(①선행특허 분석, ②기술트렌드 파악) • 제품 문제의 최종 정의(①기능 분석→②원인 분석→③모순 도출)
▽	
해결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검색키워드 추출 • 필터링을 통한 최적의 특허분석범위 선정 • 타 분야 특허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론을 활용한 해결안 도출
▽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안이 적용된 제품 설계 • 해결안의 검증 목적의 테스트, 시뮬레이션 또는 워킹목업 제작 (①적용가능성, ②혁신성, ③특허침해가능성, ④특허등록가능성) • 제품혁신 로드맵 및 특허전략 제안

□ 제품고도화

- (과제개요)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형 설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자사 제품(시제품 포함)에 대한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수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 절차)

과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주도의 기업 니즈 조사, 디자인 컨셉 및 기능 개선방향 1차 정의 * 관리기관이 지정한 과제별 총괄 담당자
▽	
디자인 컨셉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 유사분야 특허검색(①선행특허 분석, ②기술트렌드 파악) • 1차 사용자 조사를 통한 디자인 컨셉 및 제품기능 개선방향 정의 • 타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기능분석 및 검색키워드 추출
▽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분야 특허검색 및 분석을 활용한 기능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2차 사용자 조사 등을 통한 제품디자인 및 기능 개선 아이디어 검증 (①사용성, ②양산성, ③시장성, ④특허등록가능성) • 대상 제품 관련 특허 권리성 강화 및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스케치의 시각화 • 검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품디자인 개발(3D 렌더링)
▽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작 •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수준의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제공 • 지원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혜기업 측에서 부담

붙임2

기업선정 평가기준

□ 서류평가 (1차)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40)	일반현황 (10)	재무건전성 ①유동비율 100% 이상 (2점) ②부채비율 100% 이하 (1점) ③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 5% 이상 또는 영업이익률 7% 이상 (2점)	각 항목(①,②,③) 점수 합계	0~5
		매출액 규모(사업화 능력)	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3 4 5
	기술개발역량 (5)	연구소 보유여부 * 공인여부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인정서 기준	없음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0 1 2
		R&D과제 수행실적 *(정부(지자체) R&D과제 추진실적, 최근 3년간)	2회 이하 3회 이상	1 3
	인증 및 수상 (10)	각종 인증<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NEP, NET, ISO 9001, ISO 14001 등> * 사업신청당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함	2건 이하 3~4건 5건 이상	2 4 6
		기술·발명관련 수상실적(누계) * 발명관련 수상(발명의 날 포상,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특허기술상) 또는 기술관련 수상(신기술대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으로 산업훈장·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특허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실적	1건 당 2점 (4점 한도)	0~4
	지식재산 활용 (15)	지식재산등록현황 (10)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현황(누계) * 등록원부 확인 * 1건당 1점, 10건 이상 10점 만점	1건 당 1점 (10점 한도)	0~10
직무발명보상 현황 (5)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 여부	없음 직무발명보상제 도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0 3 5
정성평가 (60)	지원의 적합성 (40)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부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10 7~8 5~6 3~4 0~2
		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목표의 구체성/타당성 -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20 13~16 9~12 5~8 0~4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 (시장경쟁력, 수출·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10 7~8 5~6 3~4 0~2
	사업화 가능성 (20)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 활용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有 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20 13~16 9~12 5~8 0~4
평가총점 = 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				100

□ 발표평가 (2차)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가점 (5)	가점 항목별 인정가부 확인	가점항목표 참고	0 ~ 5
제품·기술 우수성 (25)	대상 제품 및 적용 기술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1 ~ 25 16 ~ 20 11 ~ 15 6 ~ 10 0 ~ 5
기업역량 (25)	R&D·사업화 역량 및 경영진의 참여의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1 ~ 25 16 ~ 20 11 ~ 15 6 ~ 10 0 ~ 5
제품시장성 (20)	대상 제품의 시장 규모·확장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 ~ 20 13 ~ 16 9 ~ 12 5 ~ 8 0 ~ 4
과제적합성 (20)	과제규모(금액, 기간), 수행방법 등 사업성격 부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7 ~ 20 13 ~ 16 9 ~ 12 5 ~ 8 0 ~ 4
지원기대효과 (10)	예상되는 지원결과물의 혁신성·과급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 ~ 10 7 ~ 8 5 ~ 6 3 ~ 4 0 ~ 2
평가총점(105점 만점)		105	

□ 발표평가 (2차)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3
○ 특허청 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제외 최근 3년 이내 수혜기업 및 인증기업인 경우	2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2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기준)	1
○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ICT) 지정기업	1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 사업장 소재지 기준* (‘21년 관계법령 기준) * 사업자 등록 전인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상 소재지 기준	1
○ ‘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지원사업(창업진흥원) 사례공모전 수상자 및 데모데이(IR) 왕중왕전 수상자	1
○ 노란우산공제 사업 가입자	1
최대 가점	5점